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식품원료 낫토검 추출물의 사용제한
- 제정일 : 2024년 7월 11일
- 최종개정일 : -
- 출처 : 대만 식품약품관리서 (방문일 : 2024년 9월 20일)

식품원료 나토킴의 사용제한

1.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2. 본 규정에서 정한 나토킴 원료는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료 및 사용이 승인된 식품첨가물을 배지 성분으로 삼아 나토킴(*Bacillus subtilis*)을 발효, 배양한 후 얻은 폴리감마글루탐산(polyglutamic acid)을 함유한 성분이다.
3. 전 항에서 얻은 나토킴 원료의 일일 섭취제한량은 폴리감마글루탐산(polyglutamic acid)으로 계산하여 1.8g이다.